

대법원 2000. 3. 28 선고 99다56253 판결 [보증채무금] [공2000.5.15.(106),1058]

---

## 판 시 사 항

- [1]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(한정 소극)
- [2] 금융기관이 주채무자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한 것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## 판 결 요 지

- [1]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은 금융기관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것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.
- [2] 금융기관이 주채무자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한 것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.

## 참 조 조 문

[1] 민법 제750조

[2] 민법 제750조

## 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0. 3. 28 선고 99다56253 판결

청주지방법원 1999. 8. 26 선고 98나1868 판결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98. 4. 23 선고 97가단1418 판결

## 참 조 판 례

[1]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6다카1696 판결(공1984, 1770)

## 전 문

【원고,피상고인】 농▲▲▲조합중앙회

【피고,상고인】 황×권

【원심판결】 청주지법 1999. 8. 26. 선고 98나1868 판결

## 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## 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### 1.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소외 신□식과 주채무자인 소외 곽◇환이 피고 외에도 연대보증인 1명을 더 세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거나 피고 외에 연대보증인 1명을 더 세운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곽◇환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데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,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.

### 2. 심리미진,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

가.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은 금융기관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것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(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6다카1696 판결 참조).

따라서 신□식이 곽◇환으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해 주는 등 원고의 업무규정을 위배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것이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. 원심은 신□식의 규정위배 행위와 피고의 연대보증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였으나, 상당인과관계의 문제에 앞서 신□식의 규정위배 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부적절하기는 하지만, 결국 원심이 피고는 신□식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규정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이유로,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을

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다.

나.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로부터 청구한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는 기록상 신□식이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, 위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자력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변조되었다 한들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은 없고, 신□식이 변조사실을 알아내지 못한 것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.

다. 따라서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신성택(재판장) 지창권 서성 유지담(주심)